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1 대상자와 본인 부담

-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등급인정은 **58만5000명**(노인 인구의 8.0%), 실제 서비스 이용자 **50만 명**
  - ※ 외국사례('14년 수급자비율): 일본 18.4%, 독일 15.2%

구 분	'08.7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상자	인정자 (노인인구의 2.9%)	14만 명 34만 명 (5.8%)	38만 명 (6.1%)	42만5000명 (6.6%)	46만7000명 (7.0%)	52만 명 (7.5%)	58만5000명 (8.0%)
	이용자	7만 명	30만 명	34만 명	36만5000명	40만 명	44만 명

-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단,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 2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인력

- **[기관]** 입소시설 5000여 개소, 재가시설 1만5000여 개소\* 지정·운영 중
  - \* 재가시설 기관기호 기준
  - \* 재가서비스(5종):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하루 중 3~12시간), ⑤단기보호
- **[인력]** 기관별 인력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배치
  - \* (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입소자 25명 당 간호(조무)사 1명 등
  -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37만여 명 활동 중
    - \* 240시간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 자격 취득한 자
  - **간호(조무)사**는 해당 면허자로서 노인의 건강관리·간호업무를 수행하며, 1만3000여 명 활동 중

## 3 급여유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 **[급여유형]**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의 신청인 심신상태 등 조사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 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부터 장기요양급여 가능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4 재정 운용 현황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금 +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 보험료 부과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부담금 제외기준
  - (국고지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 기타 의료급여자 급여: 국가(80%) 지자체(20%) 부담, 기초수급자 급여: 지자체
  -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부담

## 2

###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18년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19년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인상율	4.31%	4.31%	4.31%	5.2%	5.37%	6.56%

## 3

### 2019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1	65,190	13,038	69,150	13,830
2	60,490	12,098	64,170	12,834
3,4,5	55,780	11,156	59,170	11,834

####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1	56,960	11,392	60,590	12,118
2	52,850	10,570	56,220	11,244
3,4,5	48,720	9,744	51,820	10,364

##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2,020	4,803	34,120	5,118
	2등급	29,640	4,446	31,590	4,739
	3등급	27,360	4,104	29,160	4,374
	4등급	26,120	3,918	27,830	4,175
	5등급	24,870	3,731	26,500	3,975
	인지지원등급	24,870	3,731	26,500	3,975
6시간 이상	1등급	42,920	6,438	45,740	6,861
	2등급	39,760	5,964	42,370	6,356
	3등급	36,700	5,505	39,110	5,867
	4등급	35,450	5,318	37,780	5,667
	5등급	34,200	5,130	36,440	5,466
	인지지원등급	34,200	5,130	36,440	5,466
8시간 이상	1등급	53,390	8,009	56,890	8,534
	2등급	49,460	7,419	52,710	7,907
	3등급	45,660	6,849	48,660	7,299
	4등급	44,410	6,662	47,330	7,100
	5등급	43,150	6,473	45,980	6,897
	인지지원등급	43,150	6,473	45,980	6,897
10시간 이상	1등급	58,820	8,823	62,680	9,402
	2등급	54,480	8,172	58,060	8,709
	3등급	50,340	7,551	53,640	8,046
	4등급	49,070	7,361	52,290	7,844
	5등급	47,820	7,173	50,960	7,644
	인지지원등급	43,150	7,173	45,980	6,897
12시간 이상	1등급	63,070	9,461	67,210	10,082
	2등급	58,430	8,765	62,270	9,341
	3등급	53,980	8,097	57,520	8,628
	4등급	52,730	7,910	56,190	8,429
	5등급	51,470	7,721	54,850	8,228
	인지지원등급	43,150	7,721	45,980	6,897

##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1	52,830	7,925	55,710	8,357
2	48,940	7,341	51,600	7,740
3	45,200	6,780	47,660	7,149
4	44,000	6,600	46,400	6,960
5	42,810	6,422	45,140	6,771

##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30분	13,540	2,031	14,120	2,118
60분	20,790	3,119	21,690	3,254
90분	27,880	4,182	29,080	4,362
120분	35,200	5,280	36,720	5,508
150분	40,000	6,000	41,730	6,260
180분	44,220	6,633	46,130	6,920
210분	48,110	7,217	50,190	7,529
240분	51,710	7,757	53,940	8,091

##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2,540	10,881	72,540	10,881
차량이용(가정 내)	65,410	9,812	65,410	9,812
차량 미 이용	40,840	6,126	40,840	6,126

##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4,330	5,150	35,230	5,285
30분~60분 미만	43,060	6,459	44,190	6,629
60분 이상	51,810	7,772	53,170	7,976

## &lt;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대의견 결의문(수정안) &gt;

- 장기요양위원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비율 확보, 이외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 정부는 고령화 진행 상황,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소요, 2019년도 정부지원금 확정액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 상반기까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한다.